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01
----------	------

발의연월일 : 2020. 10. 27.

발 의 자 : 안민석·강민정·도종환  
문진석·민형배·서동용  
송재호·유정주·이성만  
이용빈·장경태·전용기  
전혜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신설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취약계층의”를 “취약계층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마련”을 “마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으로 한다.

②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미세먼지 입자 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u>마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미세먼지 입자 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 -----<u>마련과</u>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p>